

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3. 7. .

발 의 자 : 최훈중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 법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안 제 14조)
- 나. 주관부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시행된 모법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